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가단86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자산관리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3.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조합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2012. 6. 25.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D조합으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고도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D조합은 2020. 9. 25. 원고에게 D조합의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차전1224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8. 2.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14,940,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22. 10. 27. 확정되었다.

라.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함)에 관하여 2022. 3. 15.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1992. 12.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2. 9.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질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보유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살피건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후 피고는 C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2. 3. 15.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청도군		전496㎡
2. 경상북도 청도군		답405평
3. 경상북도 청도군		답70평
4. 경상북도 청도군		전262평

